

# 영남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교무위원회 통과일자 2001. 11.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남대학교 전 구성원간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성희롱·성폭력의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③ 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신고자를 지칭한다

제3조(성희롱·성폭력상담실) ①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센터 내에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② 상담실에 실장을 두되, 실장은 학생상담센터 소장이 겸하며, 성희롱·성폭력상담연구원을 둔다.

제4조(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성 실태 조사 및 연구
4. 성희롱·성폭력사건 처리 요청 및 보고

제5조(성희롱·성폭력 문제의 상담) ① 상담실의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를 받으면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상담실은 상담을 통하여 법률 및 심리적 지원,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6조(신고 및 신고기구) ① 신고인은 서면, 전화, e-mail, 직접방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상담실에 신고한다.

② 교·직원 대표기구, 각급 학생회, 기타 학내 기구에서 신고를 접수했을 경우 그 즉시 상담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 외에 피해자의 대리인이나 제 3자의 경우도 신고할 수 있다.

④ 상담실은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하지 못한다. 다만, 교원 또

는 직원이 가해자로 관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회) ①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센터에 성희롱·성폭력상담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 상담실장은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시켜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여성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되, 총학생회의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에 부위원장 및 간사 1인을 둔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씩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이 있을 때
3. 성희롱·성폭력상담실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성희롱·성폭력사건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조사·보고) ① 위원장은 상담실에서 회부된 사건을 지정한 위원 또는 소위원회에 심사 및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 위원 또는 소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결정 및 처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서 조사·보고된 사건을 심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2. 가해자에 대하여 관련법 및 본 규정에 의한 징계요청 등 필요한 조치
3. 가해자에게 사과, 봉사, 배상 등의 지도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상담실장을 통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 ① 총장은 상담실장의 소견서 제출 이후 2주 이내에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의결 요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은 가해자가 교원인 경우 교원징계위원회, 직원인 경우 일반직원징계위원회, 학생인 경우 학생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다만, 가해자가 시간강사, 연구원 등으로 소관 징계위원회가 없을 경우 임용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고 인사조치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의 준수) ① 사건의 처리 과정에 있어 피해자 보호를 우선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성명, 연령, 용모, 주소, 소속 및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2001.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